

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대표발의: 홍지광 의원)

의안 번호	22-127
----------	-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2. 11. .

발의자 : 강동오, 권영숙, 권인순,
김승수, 남해석, 안미자,
장정희, 차해영, 최은하,
한선미, 홍지광

1. 개정이유

마포구 구정 홍보 및 행사 등에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게시물 제작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 이전보다 지원의 폭을 넓히고, “마포구 소셜미디어 서포터스”를 운영하여 구정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소셜미디어 활용사업 예산지원 범위 정비(안 제5조)
- 나. 소셜미디어 서포터스의 운영 사항 신설(안 제6조)

3. 관계법령

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

4. 조 례 안 : 붙임

5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

6. 기타사항

가. 관계법령: 붙임

나. 입법예고: 2022. 11. 18. ~ 11. 23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제공”을 “제공하거나 게시물 제작비를 일부 지원”으로 한다.

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하고,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(소셜미디어 서포터스의 운영) ① 구청장은 구정에 대한 구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지역 소식을 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소셜미디어 서포터스(이하 “서포터스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서포터스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며, 구에 관심이 많고, 소셜미디어를 활발하게 이용하거나 소셜미디어에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, 부서추천 등의 방법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.

③ 공개모집의 경우 서포터스 구성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서포터스 공모 시 함께 공지한다.

④ 서포터스 선정에 있어 마포구민을 우선 선발할 수 있다.

⑤ 서포터스의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.

⑥ 서포터스는 기관 소셜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

한다.

1. 기사의 취재·작성

2. 콘텐츠의 공유·전파

3. 그 밖에 기관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된 제안

⑦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포터스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
1.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활동하지 않는 경우

2. 품위손상으로 서포터스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3. 그 밖에 서포터스로 활동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
⑧ 서포터스가 작성 제출한 기사와 영상물 등은 전부 반환하지 아니한다.

⑨ 구청장은 서포터스가 취재 및 제작한 게시물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, 제작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소셜미디어 활용사업) ① (생략)</p> <p>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또는 기념품·상품권 등 경품을 <u>제공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5조(소셜미디어 활용사업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<u>제공하거나 게시물 제작비를 일부 지원-----.</u>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6조(소셜미디어 서포터스의 운영)</u> ① <u>구청장은 구정에 대한 구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지역 소식을 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소셜미디어 서포터스(이하 “서포터스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서포터스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며, 구에 관심이 많고, 소셜 미디어를 활발하게 이용하거나 소셜미디어에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, 부서추천 등의 방법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.</u></p> <p>③ <u>공개모집의 경우 서포터스 구성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서</u></p>

포터스 공모 시 함께 공지한다.

④ 서포터스 선정에 있어 마포
구민을 우선 선발할 수 있다.

⑤ 서포터스의 위촉 기간은 2년
으로 하며, 한 차례 연임할 수
있다.

⑥ 서포터스는 기관 소셜계정의
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활
동을 한다.

1. 기사의 취재·작성

2. 콘텐츠의 공유·전파

3. 그 밖에 기관 소셜미디어 운
영과 관련된 제안

⑦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
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포
터스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
1.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
활동하지 않는 경우

2. 품위손상으로 서포터스로서
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
는 경우

3. 그 밖에 서포터스로 활동하
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
⑧ 서포터스가 작성 제출한 기
사와 영상물 등은 전부 반환하
지 아니한다.

제6조 · 제7조 (생 략)

⑨ 구청장은 서포터스가 취재 및 제작한 게시물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, 제작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7조 · 제8조 (현행 제6조 및 제7조와 같음)

【관 계 법 령】

지방자치법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8661호, 2021. 12. 28., 타법개정]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가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제2항(개정)

제5조(소셜미디어 활용사업)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또는 기념품·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하거나 게시물 제작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.

나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 조례안 제6조제9항(신설)

제6조(소셜미디어 서포터스의 운영) ⑨ 구청장은 서포터스가 취재 및 제작한 게시물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, 제작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 제2항 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행정지원국 홍보미디어과 심예희
연 락 처	02-3153-8267